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내규

2018.03.01 제정
2022.01.26. 개정
2022.07.22. 개정
2023.03.01. 전면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관계되는 인사, 교육 및 학사일정, 학위심사 및 학과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에 적용한다.

제 3 조 (전공분야)

보건학협동과정의 전공은 아래 표와 같다.

과 정	전 공
보건학협동과정	국제보건학(Global Health)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Health Policy and Hospital Management) 역학 및 보건정보학(Epidemiology and Health Informatics) 지역보건 및 사회역학(Community health and Social epidemiology) 환경 및 산업보건학(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제 2 장 대학원 교원인사

제 4 조 (보건학협동과정 교수의 자격)

- ①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려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정한다.
- ② 지도교수는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 3 장 교육 및 학사일정

제 5 조 (입시전형)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입시전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6 조 (석·박사과정 입학사정)

석·박사과정 입학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보건학협동과정 지도학생 수는 석·박사과정 학생을 포함하여 교수 1인당 10명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휴학생, 수료생 및 정원외 학생의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단, 위의 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별 재학생 수, 교수 수를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교육과정)

① 보건학협동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은 석·박사과정 구별이 없고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기초공통과목 9학점(보건통계학 3학점, 역학개론 3학점 필수이수 포함), 전공 6학점, 계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지도학점 제외).
2. 박사과정은 전공 12학점, 계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지도학점 제외).
3. 석·박사통합과정은 기초공통과목 9학점(보건통계학 3학점, 역학개론 3학점 필수이수 포함), 계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지도학점 제외).
4. 연구지도: 지도교수 배속 때부터 매 학기 2학점씩, 계 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지도 학점에 논문계획서 발표 및 논문 공개심사 참석 여부를 반영한다.
5. 기초공통과목: 기초공통과목은 대학원 요람에 수록된 해당 과목 중 해당 학기에 개설된 과목으로 한다.
6. 기초공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하여 기초공통과목 대신 타 과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 과목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초공통과목 담당 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과 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7. 기초공통과목 담당 교수는 대체과목 신청 학생이 기초공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동등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두로 학과관리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대체과목 승인여부는 학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지도교수 지정과목 : 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정과목을 정한다.
9. 재학 연한은 입학 연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으로 한다 (단,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다)

② 각 과정별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응시 자격은 12학점 이상, 평균 평점 3.0 이상이며 시험과목은 기초공통 1과목, 지도교수 지정 전공 2과목으로 하며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 응시 자격은 21학점 이상, 평균 평점 3.0 이상이며 시험과목은 기초공통 1과목, 지도교수 지정 전공 3과목으로 하며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 : 응시 자격은 30학점 이상, 평균 평점 3.0 이상이며 시험과목은 기초공통 1과목, 지도교수 지정 전공 3과목으로 하며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4. 기초공통과목은 역학개론으로 하며 이상의 시험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 후 결정한다. (이 항은 입학 연도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 5. 지정 전공과목은 전공에 따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가 지정한다.
- 6. 종합시험 제시험 대상자는 응시과목 중 불합격 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 이외에 소정의 어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위심사

제 8 조 (지도위원회)

- ① 시기: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 제출 시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구성: 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 1명을 포함한 교수 3명으로 한다.
- ③ 위촉: 지도교수(지도위원회 위원장)는 2명의 지도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 결정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 ④ 지도위원의 임무 : 연구계획, 진행, 해외연수, 기타 실험 및 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을 공동지도한다.

제 9 조 (학위논문계획서)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41조(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과정이수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논문계획서 제출
 - 1. 석사과정 : 등록 2회를 마친 자
 - 2. 박사과정 : 등록 2회를 마친 자
 - 3. 석·박사통합과정은 등록 4회를 마친 자가 해당
- ② 학위 논문 계획발표회는 전기는 5월 중, 후기는 11월 중에 갖도록 한다.
- ③ 작성 : 학위논문의 연구계획서는 연구목적,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방법 및 재료, 연구진행 일정 및 참고문헌의 순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계획서 작성에 따르는 기타사항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작성법” 및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제출양식에는 참고문헌 리뷰 또는 예비실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 ④ 연구계획서 제출 전에 동일한 연구가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 확정 및 출판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계획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제출 :
 - 1.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은 종합적인 연구계획을 작성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3부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한다.
 - 2. 석·박사통합과정 : 종합적인 연구계획을 작성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3부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한다.
- ⑥ 심사 :
 - 1. 심사위원회의 구성 :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지도위원 3명이 심사하고, 심사위원(지도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장이 위촉한다.
 - 2. 심사평가 : 연구계획서 심사는 구두심사를 통하여 시행하며, 논문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위원회는 불합격 판정 시에 계속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계획서의 변경 : 연구진행 도중 부득이 연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수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의 연구결과를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부터 공개발표 할 수 있다.
- ②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심사발표회를 전기는 11월, 후기는 5월에 개최하며 학위논문 발표회에서 승인된 논문에 한하여 최종학위 논문심사를 받도록 한다.
- ③ 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공개발표의 심사위원은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였던 동일한 교수 3인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좌장은 보건학협동과정 주임교수가 선정한 전임교원이 진행할 수 있다.
- ⑤ 연구결과 심사
 1. 연구결과 심사기준은 기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와의 일관성 여부,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 결과도출의 합리성 및 발표자의 내용에 대한 숙지도 등을 종합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으로 심사한다.
 2.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 ‘적합’ 판정을 받아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 심사한다.
 3. 석사과정 :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 ‘적합’ 판정을 받아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 심사한다.
- ⑥ 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에서 지도교수가 참석 못 하는 경우는 발표할 자격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지도위원) 3인 중 2인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발표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주임교수의 사전승인 하에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 11 조 (학위 청구논문 심사용 논문 제출 자격)

-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박사과정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연구지도 8학점, 평균 평점 3.0 이상 취득자.
 2. 석·박사통합과정은 전공과목 48학점 이상, 연구지도 16학점, 평균 평점 3.0 이상 취득자.
 3. 영어 및 제2외국어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박사과정의 경우 입학 연도로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입학 연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나 KCI 등재지에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 가. 원저 (original article)와, 연구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원저에 준하는 형식을 갖춘 letter, 종설 (review article)은 논문으로 인정한다.

나.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독자투고 (letter to editor), 증례 (case report), 논평 (editorial)은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동 제1 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인원이 n명인 논문인 경우, 논문 편수를 1/n로 계산하며, 그 합산이 1 이상일 때 선행논문 제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타 학과 및 교외 기관 소속의 제1 저자는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마. 재학기간 중 작성된 논문으로 소속기관이 고려대학교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은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연구지도 8학점, 평균 평점 3.0 이상 취득자.
2. 영어 및 제2외국어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입학 연도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 12 조 (청구논문 심사)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52조(논문심사위원), 제53조(논문심사판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개발표와 동일한 위원으로 5명으로 구성한다. (외부심사위원은 최소 1명, 최대 3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포함이며 교내 타 학과 교수는 외부교수로 인정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2인 등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의 자격

1. 본교의 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 또는 전문가

④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 심사발표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2회 이상의 논문 및 구술시험을 시행하여 종합 성적으로 A, B, C 등급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 4/5 이상에서 B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⑥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 2회 이상의 논문 및 구술시험을 시행하여 A, B, C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에서 B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 5 장 학과관리위원회

제 13 조 (학과관리 위원회)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학과관리위원회)에 의거하여 3인의 학과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학과관리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은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주임교수가 하고 위원은 3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학과 교원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③ 학과관리위원회 회의 : 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④ 학과관리위원회에 학과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학과관리위원회의 임무)

학과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대학원 보건의학협동과정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② 교과목개설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 ③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 ④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 ⑤ 어학시험에 관한 사항
- ⑥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⑦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학생의 입학, 진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 ⑨ 지도교수의 배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⑩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⑪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⑫ 전공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 ⑬ 학위 또는 학과에 관한 제규칙,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 15 조 (교과과정의 개편 및 조정)

- ① 시기 : 교과과정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 단, 학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할 때는 매 학기 시작 1개월 이전에 조정할 수 있다.
- ② 발의 : 개편 및 조정은 해당 교실에서 교수 간의 협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발의한다.
- ③ 절차 : 교육과정에 대한 발의 사항은 학과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학장의 인준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품의하여 확정한다. 단, 필요시 전체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 (교과목의 개설)

- ① 매 학기 개설과목은 교수 1인당 2과목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단, 전공교수가 부족하여 교수 1인이 3과목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학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매 학기 개설할 과목의 수강신청 학생 수는 과목당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경과조치) 2018년 전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제7조 ①항 개정], [제7조 ②항 개정], [제9조 ①항 개정], [제9조 ⑤항 개정], [제10조 ①항 개정], [제11조 ①항 개정], [제11조 ②항 개정], [제12조 ①항 개정]

[제7조 ①항] 개정관련 기존 재학생의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2021학년도 3월 이전 입학자)

가. 석사과정 : 기초공통 9학점,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총 27학점 이상 이수)

나. 박사과정 : 전공과목 18학점 이상 (총 36학점 이상 이수)

* 석사과정은 기초공통과목 중 보건통계학 I, 역학개론 필수 이수

[제11조 ①항] 개정관련 기존 재학생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용 논문 제출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박사과정은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연구지도 8학점, 평균 평점 3.0 이상 취득자.

나. 입학 연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11조 ②항] 개정관련 기존 재학생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용 논문 제출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석사과정은 전공과목 27학점 이상, 연구지도 8학점, 평균 평점 3.0 이상 취득자.

나. 입학 연도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2021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각 과정별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며, 필수과목인 보건통계학, 역학개론을 포함하여 과정별 최소 수료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①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